

상속대표자선정서				
상 속 대 표 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		
	전화:()	-		
	임용결격·당연퇴직 공무원과의 관계	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람을 상속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소 성명 (인) 관계 (대표자의) 주소 성명 (인) 관계 (대표자의) 주소 성명 (인) 관계 (대표자의) 주소 성명 (인) 관계 (대표자의)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퇴직보상금 신청용) 각 1부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뒤 쪽)

상속대표자 선정방법

1. 상속인증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 참조).
 -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입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임).
 -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있어서 동순위자의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퇴직보상금을 신청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합니다.